용산구 1인가구 자조모임 모임 안내서

※ 선정 안내

- 제출한 자조모임 신청서 확인 후 모임 내용, 센터 내부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오리엔테이션 진행 (3/31(금) 19:00시 진행 예정)
- 안내서와 예산기준을 참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용산구가족센터 070-7492-2655로 문의

1. 자조모임 안내

• 모임기간 : 2023년 4월 ~ 11월 10일 / 모임별 월 1회, 총 8회 이상 모임 (필수)

• 모집대상 : 3~5인 구성으로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20-40대 1인가구* 5팀
(*서울시 생활권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로 **1인가구 필수 포함**)

• 모임유형 : 건강관리, 독서 및 공부, 미술 및 공예, 문화활동 중 택 1
※ 단, 영리사업 목적, 종교적 목적,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모임 신청 불가

2. 지원사항

• 지원기준
- 월 1회 이상 활동한 모임 중 활동 증빙서류(활동보고서, 참석부, 영수증 등)를 기간 내 제출한 모임 (마지막 모임 후 12월 5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. 미제출 시 지원된 금액 반납)

• 지원규모
- 모임에 필요한 강사비, 재료비, 대여료, 대관료, 문화활동비, 식사 및 다과비, 체험비 등의 모임활동 비용
- 모임당 회기별 90,000원 이내 / 월별 150,000원 이내 / 총 8회기 지원(초과 사용 시 본인 부담)
* 모임별 성격 및 활동기간에 따라 회기별 지원금 1~2회 이월 가능

• 지원방법
- 모임 시 조장이 선 지출, 다음 달 사용금액 지원 [예) 4월 모임 후 4월에 5월 모임활동비 지급]
- **매월 28일 전까지 조장이 활동일지 및 영수증 사본을 센터 메일로 제출**
- 활동일지 및 영수증 확인 후 **다음 달 두 번째 금요일 대표자에게 사용금액 지급**

3. 지원 취소 사항

- 신청한 모임내용과 무관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
- 활동보고서 등 각종 관련 서류 제출 2회 이상 지연 시
- 타 1인가구지원센터의 자조모임 지원 중복 참여 시
- 용산구가족센터 이미지에 손상이가는 상황 발생 시

(지원 취소 및 중간 포기의 경우에도 **결과보고서 제출 필수**)

용산구 1인가구 자조모임 예산 기준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액	비고
강사비	- 강사비	[일반 Ⅲ] - 1시간 이내: 100,000원 - 초과 매 시간당: 50,000원	- 강의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- 자조모임 참여자에게는 강사료 지급 불가 - 강사이력서, 강의 계획서,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 제출 - 기타소득세 정산을 위해 강사비는 자치구센터에서 이체
식비·다과비	- 1인	12,000원	- 활동 사진, 활동보고서 - 식비 및 다과비는 전체 사업비 50% 이내 ※ 예외: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재료비로 인정 가능 ※ 비대면 시 사용 불가
시외 교통비	- 운임비	실비	- 시외/고속버스, 철도, 항공 운임만 해당 - 현지 택시, 시내버스는 미포함 - 교통카드, 유류비 지급불가
숙박비	- 1인	20,000원	
재료비	- 재료비	실비	- 구입물품 사진
교육비	- 교육비	실비	-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며, 참여자 역할에 따라 필요시 지원
체험비	- 체험비	실비	
대여비	- 대여비	실비	- 대여물품 사진
대관비	- 대관비	실비	- 대관 장소 사진 - 이체 시: 사업자등록증, 계좌이체확인증 제출
인쇄비	- 현수막 제작 - 교재 제작	실비	- 인쇄물사진, 견적서, 홍보인쇄물 시안
도서구입비	- 도서구입비	실비	- 구입도서 사진 - 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 ※ 예외: 독서모임 등 도서구입이 교육재료비 인정되는 경우
보험비	- 보험비	실비	- 여행 및 탐방 시 상해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- 보험증권사본, 계좌이체확인증
입장료	- 입장료	실비	- 입장권, 참석자명단
우편료	- 우편료	실비	- 자치구센터 자료 제출 시

※ 기타사항

- 세금계산서, 영수증, 이체확인증 등 기본 증빙서류 제출은 각 항목별 공통 사항
- 명확한 산출 근거 및 용도와 목적 명시
- 부득이 상기 항목 이외 및 금액 초과한 사업비 사유 명기하고, 필요 시 심의과정에서 조정
- 증빙자료는 사진(활동 내용, 구입물품 등)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금전등록기 영수증, 온라인 이체확인증,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등이며, 영수증에는 반드시 거래내역(품목) 기재 카드전표는 거래내역서 첨부
- 자조모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

※ 예산 지원 범위

- 식사비 및 다과비는 모임별 총 지원액의 50% 이내 (720,000원 기준 360,000원 이내)
 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의 경우 식자재비 및 도서구입비는 교육 재료비로 인정
  단, 비대면 활동 시 식사비 및 다과비 지원 불가
- 1년간 대여비용과 구입비용을 비교하여 구입비용이 크게 저렴한 경우 견적을 통해 구입 및 관리를 허용하나 모임 활동 종료 후 용산구가족센터에 반납
- 자조모임 내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